

제323회 임시회

2013. 9. 4(수)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 · 벤처연구센터
관리 · 운영 조례안

건 설 소 방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문홍열

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 · 벤처연구센터 관리 · 운영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13년 8월 23일

나. 회부일자 : 2013년 8월 28일

3. 제안이유

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연구개발기관 · 기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연구개발기관 · 기업간 교류협력을 지원하고자 건립하는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 · 벤처연구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

4. 주요내용

가. 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- 오송첨복단지 내 기관 · 기업과 관련된 연구원에게 숙박시설 제공
- 오송첨복단지 내 기관 · 기업에게 회의실, 벤처연구실, 공동장비실 및 편의시설 제공

나. 센터의 위탁 관리 ·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- 위탁 관리 규정 마련
- 위탁기간은 5년이며, 위탁기간은 연장 가능함

다.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- 센터 시설 사용자에 대한 이용료 산정
- 시설 이용료 또는 시설 임대료 면제 가능 범위 제정

라.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마. 지도·감독 관한 사항(안 제7조)

5. 검토내용

가. 조례제정의 필요성

-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과 기업체에 다양한 편의시설 제공과 교류협력을 지원하고자 전립하는 커뮤니케이션·벤처연구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·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무를 위탁할 수 있고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제5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4조(사용료)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용료를 정할 수 있으므로, 제정조례안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조문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며,
-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따라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6. 검토의견

가. 「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·벤처연구센터 관리·운영 조례안」을 검토한 바,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에 위치한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·벤처연구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나. 다만, 센터의 운영방안을 결정함에 있어 위탁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, 아니면 사업소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.